

전쟁 (1950) 까지 연극 (1950)

戰時性的強制被害者補償要綱 (第一次案)

전시성적강제피해자보상요강 (제1차안)

Draft Outline of the Law for Compensation to Victims of Wartime Forced Sex
(The First Draft)

战时被强制性行为受害者补偿纲要 (第一案)

1999. 7

元『慰安婦』の補償立法を求める弁護士協議会

전 <위안부> 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 협의회

Association of lawyers calling for enactment of the law providing compensation
to ex-"comfort women"

请求制定原‘慰安妇’补偿立法的辩护团协议会

변호단으로부터

원고(피해자) 및 지원자 여러분께—

1999년 1월 21일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받고 있는 7변호단이 모임을 가져 “전 <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전년 4월 27일에 나온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판결(이하 시모노세키판결이라고 함)에 촉발되어 전 “위안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적 해결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제안하는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보상 요강(안)”(이하 요강안이라고 함)은 이 변호단협의회에 참가한 변호단의 토의 결과를 전시집에서 제1차안으로서 정리한 것입니다.

시모노세키판결은 전 “위안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하는 것이 나라의 헌법상의 의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요강안은 시모노세키판결이 제시한 입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전 “위안부” 분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조치로서는 배상금의 지불, 원상회복, 공식사죄, 의료비 및 생활복지비 등의 지급, 교육보급활동 등등이 될 것입니다. 요강안은 이중 보상금의 지불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시금으로서 지불하는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즉 피해회복조치들 중의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기다려 피해회복조치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제안하는 요강안은 변호사 레벨에서의 토의결과이며 원고(피해자)이신 의뢰사들과 상의하기 위한 재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치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계 각국의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요강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해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과 단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 7월

“전 <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 협의회”

座長 아이타니 구니오

협의회 참가 변호단 일람

- 부산중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변호단
- 필리핀 “중군위안부” 국가보상 청구소송 변호단
- 재일 전 “위안부” 사죄 보상 청구소송 변호단
- 네델란드 전 포로·민간억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단
- 중국인 전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호단
- 중국 산서성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변호단
- 대만 “위안부” 배상 청구 변호단

(이상 재소 순위내 따름)

[토의에 참가한 변호사 이름]

아이타니 구니오
오오모리 노리코
오노 미나코
가와구치 가즈코
기요이 레이저
수가누마 도모코
수즈키 이소미
미키 에미코
야마모토 하루타

(이상 일본어 50훈 순위)

연락처

〒105-0003 日本

東京都港区西新橋一丁目17番11号

리바티 11 6F

新橋中央法律事務所

전화 +81-3-3580-2010

FAX +81-3-3580-2011

弁護士 藍谷 邦雄 (아이타니 구니오)

전시성적강제피해지보상요강 (제1차안)

1. 목적

이 법률은 국가가 제2차대전의 전진, 전중기에 있어서 구 일본군의 직접적 간접적 관여에 의하여 여성에 대해 군 "위안부" 등으로서 성적행위를 강제하고 전후 그 피해를 계속 방치한 것이 일본국 헌법의 근간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였다고 인정하고 이들 여성개인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시성적강제피해자 — 정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란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내각총리대신이 각국 또는 지역별로 유형적으로 지정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가리킨다.

3. 보상

국가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들 중 1993년 8월 4일자 내각관방내각외정실의실 조시보고서 "소위 종군위안부에 대하여" 가 공표된 날의 생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이 법률에 의거하여 일시금으로서 전시성적강제피해자 1인당 원 * * * 원을 지급한다.

4.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보상위원회

내각총리대신은 보상금 수급요건의 인정수속 및 지급방법의 확정, 그리고 보상금 지급의 실시를 위하여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설립한다.

5. 사업의 실시와 홍보의무

국가는 이 법률에 기초한 보상금의 지급사업을 5년이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를 위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요강안에 대한 설명

1. 목적

이 법률은 국가가 제2차대전의 전진, 전중기에 있어서 구 일본군의 직접적 간접적 관여에 의하여 여성에 대해 군 "위안부" 등으로서 성적행위를 강제하고 전후 그 피해를 계속 방치한 것이 일본국 헌법의 근간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였다고 인정하고 이들 여성개인("전시성적강제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멘트

① 보상대상의 기간

본 요강에서는 "제2차대전의 전진 전중기" 라고 했는데, 구체적 대상기간으로서는 1931년으로부터 45년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는 표현의 방법으로서 삼기와 같이 했으나 법안에서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대상자

본 요강에서는 참가한 변호단의 의뢰자들이 모두 일본인 이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시에 일본국적은 보유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자)임으로 일본인 이외를 대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일본인 포함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운동상의 문제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를 일본인 이외로 하는 취지를 법률 속에 포함하는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다.

상기 문구 외에 대상자를 일본인 이외로 한다면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입법하는 과정의 국내적 실득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이해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③ "일본국 헌법의 근간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 라는 문구는 시모노세키 판결에 의거한 것이다. 본 요강안은 동 판결 속에서 입법의 필요성으로서 강조된 논리를 최대한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되었다. 그래서 동 판결의 논리적 중심이 되어 있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④ 목적에는 "침해를 인정" "사죄" "보상"의 3요건을 넣기로 하였다. 이에 의하여 이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의 성격이 상징적 배상의 뜻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⑤ 이 목적의 취지에 따른 국회결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전시성적강제피해자 — 정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란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내각총리대신이 각국 또는 지역별로 유형적으로 지정하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가리킨다.

코멘트

① 명칭-----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라고 한

뜻에 대하여

명칭에 대해서는 상기 외에 "전일본군<위안부>" "진시성노예제피해자" 라고 하는 안이나 "전시성폭력피해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후자는 아주 유익한 의견이기도 했다. 피해자를 표현하는 말로서 무엇이 적합한가는 본요강에서는 뒤에 언급하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런 피해 양태를 본요강에서 밝히는 보상의 대상으로 하는가에 관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피해의 양태에 대해서 오해될 가능성을 꺼려하지 않고 그 개략을 분류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피해 양태를 개략하면

a. "위안소"에서의 피해

... 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 권이

b. 조직적 또는 계속적인 강간

c. 인신적인 강간

의 3유형이 생각된다. 이 중 어느 유형까지를 보상의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명칭도 달라질 것이다. 이 동인의 검토결과로서는 시모노세키 판결은 실려진 입장에서 a, b의 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b를 조직적 또는 계속적이라고 한것은 조직적인 경우 속에 인신성의 강간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 전술한 데 의거해서 말한다면 "전시성폭력피해자" 라는 문구는 c를 포함하게 되고 "전시성노예제피해자" 등의 문구는 a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전시성적강제피해자"가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이 된 것이다.

② 대상지역

대상지역을 법률사항(법률조문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할것인가, 政令 등의 하위법령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기로 하였다. 대상지역에 따라 피해 양태 등 각종 차이가 있고 해경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지역에 따른 순차지급으로 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에 의한 탄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보상

국가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들 중 1993년 8월 4일자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 조사보고서 "소위 총군위안부에 대하여"가 공표된 날의 생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이 법률에 의거하여 일시금으로서 전시성적강제피해자 1인당 금 * * * 원을 지급한다.

코멘트

① 보상의 법적근거 — 창설적 규정인가, 손해배상 의무의 확인 규정인가?

※ 가장 논의가 있는 문제이다. 창설적 규정이란 이 법률에 기초하여 새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발생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의무의 확인 규정이란 이미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특히 전시성적강제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배상 의무를 확인하고 배상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의무의 확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종래의 법체계 속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각종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확실적인 법적 권리로써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있다. 시모노세키 판결에서도 입법부 작위에 의한 손해를 인정하기는 했는데 성격상 재외해 시제의 손해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손해배상 의무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입증도 필요하게 되며 금액도 각기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함과 동시에 일정금액의 일시금으로 하기가 이렇게 된다. 또한 시모노세키 판결에 따라 계속 방치한 책임을 문제로 한다면 새로운 권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도 평화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창설적 규정으로 한다면 혹시 해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로 보상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스 등의 사고방식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 여기서는 창설적 규정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기로 했다.

주: "이 법률에 기초하여" 라는 문구가 그것을 의미한다.

* 또한 일정액에 의한 상징적 보상이라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했다.

주: 1. 목적의 함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보상한다" 라는 말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상징적 배상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다.

② 창설적 규정으로 한 경우의 권리의

종래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이며 종래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른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계속할 수 있다. 단 뒤에 말하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성격 — 일시금인가 연금인가?

연금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에는 적합하지 않겠나 하긴 생각도 있는데 본 요강의 취시가 금전보상에 의한 상징적 배상이라는 뜻을 고려한다면 일시금이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여기서는 일시금으로 했다.

④ 보상금의 금액 — 금후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상징적 배상이라는 뜻에서 일시금으로서 그 금액에 대해서 생각한다. 금액은 안으로서는 재기하지 않는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금액은 후의 방기조항(放棄條項)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데 본 요강에서는 방기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 방기조항이란 이 법률에 기초한 지급에 의하여 금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안한다고 확정하는 것이다. 수급한 경우 소송은 취하하게 되고 새로 소송을 걸지도 못한다.

유사범의 예로서는 USA의 대일 본인 강제수용의 보상법에 방기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내란 소송에 있어서 화해합의에 의하여 취하된 사실이 선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법률상은 방기조항의 예는 거의 없다.

단 방기조항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수급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손익상실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⑤ 대상자 — 생존자에 한하는가 또는 유족을 포함하는가

여기서는 시모노세키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보고서의 공표시 생존자 및 그 후에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정했다. 이것은 동 판결이 말하는 계속 방치한 사실이 위법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공표되어 생존피해자가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이다.

4.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보상위원회

내각총리대신은 보상금 지급요건의 인정수속 및 지급방법의 확정, 그리고 보상금 지급의 실시를 위하여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설립한다.

코멘트

① 소관

행정으로서 어느 성청(省庁)의 소관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경위로부터 후생성, 외무성 등이 상기되는데 여기서는 내각으로 했다.

② 위원회의 성격

여기서는 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한다. 독립행정위원회란 내각의 통제 아래 있는데 상급의 시위감독기관으로부터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다. 독립행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효를 독립성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인성기관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기가 인정한다.

그 경우에는 위원회 임명자,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권한 등을 정함에 있어서 독립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불복 신청 수속

위원회의 수급결정(기각의 경우)에 불복인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수속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위원회로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상급청에 불복을 신청하는 행정불복수속을 한 다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해서 소송을 행하는 행정소송 수속에 따르게 된다.

⑤ 실시기관

지급이 인정된 후 지급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보상위원회를 실시기관으로 했다. 실제적인 지급에 관해서는 각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

⑥ 행정위원회 규칙으로 할 것인가,

또는 법률 사항으로 할 것인가

신청권자, 신청수속 등을 법률 사항, 또는 행정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고려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건은 법률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경우의 요건으로서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다.

- 개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가, 혹은 위원회의 職權探知로 하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의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 경우에도 NGO가 대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공지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권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에 대해서 주지 의무를 지니게 하고 일반적인 職權探知는 불허해야 한다.

5. 사업의 실시와 홍보의무

국가는 이 법률에 기초한 보상금의 지급사업을 5년 이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를 위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코멘트

(1) 법적인 사고방식

여기서의 사고방식은 사업의 완수를 5년 이내로 행하는 것을 목표로 과보호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5년 이내로 지급산정이 나오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로 될 것이다. 5년을 기한으로 해서 기한내에 지급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시한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요강에서는 시한법의 사고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5년 이내에 완수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는 점, 전승한 순차 지급의 방법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이다.

주: 시한법이란?

- * 기한을 정해서 정구를 차단하는 것이다. USA의 일본인에 대한 보상은 시한법이었다.
- * 시한법으로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라가 신청을 촉구하는기, 또는 식권에 의하여 남지하는기 등이 필요하게 된다. USA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탐지했다.

(2) 홍보의무

본 요강에서는 시한법으로는 하지 않는 데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촉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했다. 이를 홍보의무로 규정된 것이다.